

## 차의과학대학교 교육혁신원 운영 규정

제정 2019.06.04.

개정 2020.03.01. 개정 2020.04.06.

### 제1장 총칙

#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차 의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) 교육혁신원(이하 “혁신원”)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,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조 (주요업무)

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혁신을 위한 제반 연구, 사업 운영 및 관리
2. 교육과정, 교육정책 연구 및 제안
3.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관리
4. 교수-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5. 기타 혁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

### 제2장 조직

#### 제3조 (조직 및 구성)

- ① 혁신원에는 교육혁신센터와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둔다. <개정 2020.3.1.>
- ② 혁신원에는 교육혁신원장을 두고 혁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,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교육혁신센터에는 교육성과관리팀을 둔다.
- ⑤ 각 센터에는 연구 및 행정 인력을 둘 수 있다.

#### 제4조 (교육혁신센터)

교육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혁신을 위한 제반 연구, 정책 수립 및 성과관리
2. 교과,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
3. 교육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
4. 각종 교육 성과 진단, 관리, 분석 및 환류
5. 소속 위원회 운영 및 대학교육 평가 과정 관리

6. 그밖에 센터 운영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### 제5조 (교수학습지원센터) <개정 2020.3.1.>

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0.3.1.>

1. 교수-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, 연구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
2. 이러닝 콘텐츠, 교육매체 개발 및 운영 지원
3. 교육-학습 상담 및 컨설팅, 교육환경 개선 서비스
4.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성과 분석, 환류
5. 그밖에 센터 운영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## 제3장 위원회

### 제6조 (위원회)

- ① 혁신원은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사업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1. 교육혁신위원회
  2. 교육인증위원회
-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7조 (교육혁신위원회)

- ① 대학의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교육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1. 교육혁신을 위한 정책 및 모델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2. <삭제 2020.4.6.>
  3. 기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### 제8조 (교육인증위원회)

- ① 대학의 교과, 비교과의 인증 및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인증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교육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1. 교과, 비교과 및 교육과정 등 교육 인증에 관한 사항 <개정 2020.4.6.>
  2. <삭제 2020.4.6.>

3. 기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#### 제4장 보칙

##### 제9조 (준용 및 운영세칙)

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,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# 부 칙 (2019.6.4. 공포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# 부 칙 (2020.3.1. 공포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# 부 칙 (2020.4.6. 공포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